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026년 평가방안으로 본 8개 법정 기준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거점의 조건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확정됐는가. 지정 여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되면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에게 무엇이 실제로 달라지는가.

전북은 2026년 1월 29일 개발계획을 제출했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8월 19일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지정 결정 자체는 아직 나지 않았다. 12인의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 가능성, 금융기관 유치 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개발계획 현실성, 국민·지역경제 효과, 도시계획 부합성, 주민·기업 의견의 8개 법정 요소를 평가하고 위원회가 연내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정은 정책지원의 출발점이지 금융회사 이전, 운용 자산 증가, 고용 창출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면허가 아니다.

‘제3 금융중심지 확정’이라는 표현보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과 관보 고시를 먼저 확인한다. 투자·입주 판단에서는 지정 명칭보다 개발구역, 지원 요건, 실제 입주기관, 전문인력 순증, 운용·거래·수탁 기능의 현지 수행 여부를 본다. 세제지원은 비수도권 금융중심지 안에서 2028년 말까지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고 업종·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세법 요건을 따로 검토한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확정됐는가. 지정 여부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되면 자산운용회사와 투자자에게 무엇이 실제로 달라지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전북은 2026년 1월 29일 개발계획을 제출했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8월 19일 평가방안을 확정했다. 지정 결정 자체는 아직 나지 않았다. 12인의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국제 금융중심지 발전 가능성, 금융기관 유치 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개발계획 현실성, 국민·지역경제 효과, 도시계획 부합성, 주민·기업 의견의 8개 법정 요소를 평가하고 위원회가 연내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정은 정책지원의 출발점이 지 금융회사 이전, 운용자산 증가, 고용 창출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면허가 아니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제3 금융중심지 확정’이라는 표현보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과 관보 고시를 먼저 확인한다. 투자·입주 판단에서는 지정 명칭보다 개발구역, 지원 요건, 실제 입주기관, 전문인력 순증, 운용·거래·수탁 기능의 현지 수행 여부를 본다. 세제지원은 비수도권 금융중심지 안에서 2028년 말까지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고 업종·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세법 요건을 따로 검토한다.

이 보고서 읽는 법

이 보고서는 2026년 8월 21일까지 공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중심지법과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전북특별자치도 발표를 대조했다. 금융위원회가 확정된 사실, 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계획·전망, 연구소의 분석을 구분한다. 평가요소별 점수와 배점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문에서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임의 점수를 사실처럼 쓰지 않는다. 본문의 계산표는 공개된 3.59km² 구역을 기능별 면적으로 나눈 단순 비중과 평가 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시나리오다.

‘금융중심지’는 법률상 지정구역을 뜻하고, ‘금융도시’나 ‘금융허브’는 정책·홍보 표현일 수 있다. 금융회사 인가, 공공기관 이전, 조세감면, 보조금은 각각 별도의 법령과 요건을 따른다. 지정과 개별 지원을 같은 결정으로 읽지 않는 것이 이 보고서의 출발점이다.

차례

- 01 전북은 신청했고 위원회는 평가방안을 정했다
- 02 지정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않는가
- 03 8개 법정 기준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 04 자산운용 특화는 기관의 수보다 기능의 연결로 평가해야 한다
- 05 세제·보조금·고용효과는 조건과 시차가 있다
- 06 연말 결정 전 무엇을 하면 되는가
- 부록 가 용어 풀이
-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01

전북은 신청했고 위원회는 평가방안을 정했다

신청, 평가방안, 지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개발계획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대상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km²다. 전북도 발표에 따르면 중심업무지구 0.14km², 지원업무지구 1.27km², 배후주거지구 2.18km²로 나뉘었다. 신청서를 냈다는 것은 법정 심사를 시작했다는 뜻이지 지정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구용역 공모를 거쳐 5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연구수행기관은 경제·금융·법률 전문가 12명으로 총괄·금융·개발 분과 평가단을 구성했다.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8월 19일 평가요소, 지표, 배점과 절차를 포함한 평가방안을 보고받고 확정했다. 평가단은 3~4분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하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연내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단계	확인된 사실	아직 남은 것
신청	2026.01.29 전북 개발계획 제출	제출 내용의 충족 여부
평가 설계	2026.08.19 평가방안 확정	세부 점수와 평가 결과
현장 검증	3~4분기 예정	기관·인력·시설의 실재와 지속성
위원회 심의	연내 예정	지정·보완·미지정 결론
지정 후	금융위원회 통지·고시 절차	사업별 예산, 세제, 입주와 성과

전북도 1월 자료는 상반기 평가와 6월경 심의를 예상했지만 실제 금융위원회 일정은 8월 평가방안 확정, 3~4분기 평가, 연내 심의로 바뀌었다. 이는 신청기관의 예상 일정과 결정기관의 확정 일정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다. 날짜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긍정 또는 부정 결론을 추론할 수도 없다.

제7차 기본계획은 전국 전략이고 전북 평가는 개별 지정 절차다

같은 회의에서 2026~2028년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도 심의됐다. 기본계획의 4대 과제는 금융산업 혁신, 글로벌 수준 금융인프라,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다. 자본시장 과제에는 해외투자자 친화적 제도·

인프라, 시장 신뢰, 자산운용산업 고도화가 포함됐다. 금융중심지 지원 과제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외국계 금융회사와의 소통, 서울·부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들어갔다.

기본계획은 전국의 3년 정책 방향이고, 전북 지정은 특정 구역을 법정 금융중심지로 추가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두 안건이 같은 날 다뤄졌다고 해서 기본계획이 전북 지정을 선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서울·부산 전략과 새 후보지의 역할이 중복되는지, 국가 전체 금융경쟁력을 높이는지가 평가 질문이 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신청서 제출, 평가방안 확정,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 고시를 한 단계씩 구분한다.
2. 신청기관이 제시한 예상 일정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일정과 다를 수 있다.
3. 8월 21일 현재 결론은 '평가 진행 예정'이며 지정 확정이 아니다.

02

지정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않는가

법은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묶는다

금융중심지법은 금융위원회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 집적과 금융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시·도지사는 신청 전에 개발계획안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전문가와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출 개발계획에는 위치·면적, 필요성, 사업기간, 재원조달, 금융기관 현황, 유치·이전 계획, 기반시설, 생활환경, 외국어 서비스와 경제효과가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지정은 지도 위에 이름만 붙이는 일이 아니다. 구역 경계와 개발계획이 함께 심사되고, 이후 계획 변경이나 지정 해제도 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반대로 지정만으로 개발계획의 모든 사업에 국비가 자동 배정되지는 않는다. 예산사업은 국가재정 절차, 건축·교통사업은 개별 인허가, 금융회사는 업권별 인가·등록을 따로 거쳐야 한다.

금융회사 인가와 공공기관 이전은 별도 결정이다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가 지정구역에 사무실을 낸다고 바로 새로운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합투자업, 투자매매·중개업,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등록 범위와 인력·전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점이나 부서 이전도 회사의 이사회·경영 판단, 감독당국 절차, 임대·고용계약이 따라온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사실은 자산운용 수요와 네트워크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금융중심지 지정이 다른 연기금·공제회나 민간 운용사를 전북으로 옮기는 강제명령은 아니다. 기관 수를 늘리는 목표는 유치협약, 실제 법인·사업장 개설, 상근인력 배치로 이어져야 실현된다. 연락사무소 한 곳과 투자판단·거래·위험관리 인력을 갖춘 운용거점은 경제적 기능이 다르다.

지정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나눠야 한다

구분	지정이 직접 만드는 것	별도 조건이 필요한 것
법적 지위	지정구역과 개발계획의 국가 심의	개별 금융업 인가·등록
정책 지원	지원센터·유치·홍보 정책의 근거	예산·보조금의 사업별 확정
세제	비수도권 금융중심지라는 장소 요건	창업·신설, 업종, 기한, 투자·고용 요건
기관 집적	유치정책의 공통 표지	회사·공공기관의 실제 이전 결정
시장 성과	자산운용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	운용자산, 거래, 수익, 일자리의 증가

지정 여부를 투자판단에 활용하려면 발표 직후의 기대와 실제 현금흐름을 분리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지역기업 주가가 '금융중심지 수혜'라는 말로 먼저 움직일 수 있지만, 지정이 특정 사업자의 수익을 보증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구역 안에 있는지, 지원 대상 업종인지, 투자비와 상시고용을 만들었는지,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금융중심지 지정은 구역·개발계획에 관한 결정이지 개별 회사의 금융업 면허가 아니다.
2. 공공기관 이전, 민간회사 입주, 국비 배정과 세제감면은 별도 결정과 요건을 따른다.
3. 기대효과는 법적 직접 효과와 입주·고용·거래가 만든 간접 효과로 나눠 본다.

03

8개 법정 기준은 무엇을 검증하는가

같은 숫자를 여러 항목에 반복해서 넣으면 안 된다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6조는 여덟 가지 고려사항을 둔다. 국제 발전 가능성, 금융기관·관련 산업의 현황과 유치 가능성, 경영·교육·생활환경, 전문인력, 개발계획 현실성, 국민·지역경제 효과, 도시·군기본계획 부합성, 주민·기업 의견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인 평가단이 이를 심층 평가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단순 기관 수 순위표가 아니다. 국민연금 한 기관의 자산 규모를 국제 발전 가능성, 기관 집적, 전문인력, 경제효과에 모두 반복해 넣으면 같은 강점을 여러 번 계산하게 된다. 각 항목의 증거 단위를 구분해야 한다.

법정 요소	적합한 검증자료	경계할 주장
국제 발전 가능성	해외기관의 실제 기능, 국제 거래·위탁·공동 투자	국제행사 횟수만으로 글로벌화 판단
기관·산업 현황과 유치	법인·사업장·상근인력·계약	업무협약을 입주 완료로 계산
경영·교육·생활환경	교통, 국제교육, 의료, 주거, 배우자 고용	시설 계획을 현재 공급으로 계산
전문인력	직무별 재직자, 채용·이직, 교육 후 정착	교육 수료자를 상근 운용인력으로 계산
계획 현실성	토지, 자원, 사업주체, 기한, 인허가	총사업비만 제시하고 재원주체 생략
국민·지역경제 효과	전국 순편의, 지역 부가가치·고용의 순증	다른 지역 감소분을 빼지 않은 총효과
도시계획 부합성	용도·교통·주거계획과 법정계획	금융 명칭만 붙인 일반 개발사업
주민·기업 의견	공고, 설명회, 찬반과 보완 반영	참여 인원만으로 사회적 합의 판단

국제성은 해외 이름이 아니라 기능으로 측정해야 한다

외국계 기관 16곳을 유치했다는 전북도의 발표는 출발자료다. 평가에서는 그 기관이 법인인지 사무소인지, 상근인력이 몇 명인지, 운용·리서치·리스크 관리·수탁 가운데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가 국민연금이나 국내 운용사와 공동투자를 하고 현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단순 방문·자문인지도 다르다.

국제 금융중심지의 네트워크 효과는 여러 기능이 가까이 있을 때 생긴다. 자산소유자, 운용사, 증권사, 은행, 수탁회사, 회계·법률·평가회사, 데이터·핀테크

크 기업, 대학과 감독기관이 인력과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한 대형 기관의 존재는 앵커가 될 수 있지만 연결기관이 부족하면 거래와 전문서비스는 다른 도시에서 수행될 수 있다.

경제효과는 총효과보다 순증을 봐야 한다

전북도는 지정 시 고용과 지역내총생산 증가 전망을 제시해 왔다. 이런 전망은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존 공공기관 직원을 새 일자리로 포함했는지, 타지역에서 옮겨온 일자리를 국가 전체 순증으로 계산했는지, 건설기간의 일시 고용과 상시 금융전문직을 분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명의 조직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면 전북 고용은 100명 늘 수 있지만 국가 전체 금융고용은 그대로다. 반면 이전을 계기로 30명의 데이터·리스크관리 인력이 새로 채용되고 지역 전문서비스 회사가 20명을 고용하면 국가 순증은 50명이다. 지역효과와 국가효과를 같은 숫자로 쓰지 않아야 법정 기준의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를 모두 평가할 수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8개 기준마다 증거의 단위를 달리하고 하나의 기관 규모를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2. 업무협약, 사무소, 상근 운용거점, 실제 거래 기능을 서로 구분한다.
3. 경제효과는 지역 증가, 타지역 이전, 국가 순증, 건설기 고용과 상시고용으로 분해한다.

04

자산운용 특화는 기관의 수보다 기능의 연결로 평가해야 한다

연기금은 자산소유자이고 운용생태계 전체는 아니다

전북의 핵심 논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자산운용 특화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자산을 국내외 주식·채권·대체투자에 배분하는 자산소유자다. 운용사는 위탁자금을 맡고, 증권사와 은행은 거래·외환·자금조달을 지원하며, 수탁기관은 자산을 보관하고, 회계·법률·평가기관은 거래를 검증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있으므로 운용사가 온다'는 한 문장 사이에는 위탁 선정, 현지 접점의 필요성, 전문인력 채용, 투자위원회 권한, 글로벌 파트너의 접근성이라는 여러 조건이 있다. 국민연금과 회의를 위해 소수 인력이 상주하는 것과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리스크·준법·운영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은 파급효과가 다르다.

3.59km² 개발구역은 기능별 균형을 검증해야 한다

전북도 공개 면적을 합계로 나누면 중심업무지구는 약 3.9%, 지원업무지구는 약 35.4%, 배후주거지구는 약 60.7%다.

구역	면적	단순 비중	확인할 기능
중심업무	0.14km ²	3.90%	핵심 금융기관·투자결정 기능
지원업무	1.27km ²	35.38%	법률·회계·데이터·핀테크·교육
배후주거	2.18km ²	60.72%	주거·교육·의료·생활서비스
합계	3.59km ²	100.00%	구역 간 이동과 단계별 공급

이 비중은 좋고 나쁨을 판정하는 점수가 아니다. 업무기능은 고밀도로 배치할 수 있고 생활환경은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개발면적이 실제 입주 수요와 맞는지, 중심업무지구가 운용·거래 기능을 담기에 충분한지, 지원업무지구가 일반 상업시설로 채워지지 않는지, 배후주거 공급이 금융전문인력의 정착과 연결되는지다.

계산의 한계도 분명하다. 3.59km²는 신청계획상 구역이고 실제 개발 가능 면적, 기존 시설, 용적률, 사업기간과 재원은 공개 요약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면적 비중을 경제효과나 성공확률로 바꾸면 안 된다.

서울·부산과의 관계는 대체보다 분업으로 검증해야 한다

현재 지정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이다. 전북도는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 전북의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이라는 분업을 제시한다. 이 구분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업무가 겹치지 않는다는 설명보다 도시 사이의 거래 흐름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북의 자산소유자와 운용사가 서울의 자본시장·본사 기능, 부산의 거래소·파생·해양금융 인프라와 어떤 데이터·계약·인력망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줄 수 있다. 한 도시의 기관을 다른 도시로 옮기는 경쟁만으로 설계하면 국가 전체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새로운 해외자금·전문인력·상품·투자기업을 끌어오는 순증 전략이어야 '국제적 금융중심지 발전 가능성'과 '국민경제 효과'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자산소유자, 운용사, 거래·수탁, 전문서비스와 인력양성 기능을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한다.
2. 3.59km² 구역 비중은 설명자료일 뿐 성공률이나 경제효과가 아니다.
3. 서울·부산과의 기관 이전 경쟁보다 해외자금·전문기능의 국가 순증을 본다.

05

세제·보조금·고용효과는 조건과 시차가 있다

세제감면은 지정만 받으면 생기는 자동 권리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정 금융중심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사업장을 단순히 이전하는 경우는 조문상 신설 요건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을 기준으로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구조가 있지만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한도가 있다.

고용이 줄거나 투자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업장을 구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세액을 납부하는 규정도 있다. 따라서 '지정되면 모든 금융회사 법인세가 5년 감면된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다. 회사별로 위치, 창업·신설 시점, 대상 업종, 투자액, 상시근로자, 소득 발생,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2028년 말이라는 현행 기한과 실제 지정·입주 시점 사이의 시간도 중요하다.

보조금은 재원과 지급조건을 봐야 한다

전북도는 사업용 설비, 신규 채용과 교육훈련 지원을 제시했다. 실제 지급 가능액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근거 규정, 예산 편성, 지원사업 공고, 회사의 투자·고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개발계획에 지원 항목이 있다는 것과 특정 회사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다르다.

지원의 효율성도 평가해야 한다. 같은 회사가 여러 제도의 세제·현금 지원을 중복해서 받는지, 지원이 없었어도 들어올 기관인지, 보조금 종료 뒤에도 사업장과 인력이 남는지, 고임금 전문직과 단순 지원직의 비중이 어떤지를 공개해야 한다. 유치기관 수만 목표로 두면 주소만 옮기고 핵심 의사결정은 다른 지역에 남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발표효과와 실물효과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

지정 심의 전에는 기대가 자산가격과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토지·건축·교통·정주 인프라를 만들고, 금융회사는 예산·인사·인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 고용과 운용기능이 생기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성과를 측정할 때는 기준연도를 고정해야 한다. 지정 전 이미 있던 국민연금과 기존 기관을 지정 성과로 다시 계산하지 않고, 지정 뒤 순증한 법인·상근인력·운용자산·위탁계약·국제공동투자·전문서비스 매출을 추적해야 한다. 공사비와 일시 고용은 금융산업 상시성과와 별도 표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

시점	쉽게 보이는 숫자	실제로 확인할 숫자
심의 전	업무협약·유치 발표	법적 구속력, 담당 기능, 예정 인력
지정 직후	구역·사업계획	예산, 인허가, 토지·건물 계약
입주 단계	입주기관 수	법인·사업장, 상근인력, 핵심 직무
운영 단계	운용자산 총액	현지 결정 자산, 거래·수탁·전문서비스
성과 단계	지역 생산·고용 총액	기준선 대비 순증, 국가 순편익, 지속률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세제감면은 비수도권 구역, 2028년 말 기한, 창업·신설, 업종·투자·고용 요건을 함께 본다.
2. 보조금은 개발계획 문구가 아니라 예산·공고·지급결정과 사후 유지조건으로 확인한다.
3. 지정 전 기존 자산과 기관을 성과로 다시 계산하지 않고 지정 뒤 순증을 추적한다.

06

연말 결정 전 무엇을 하면 되는가

평가결과는 결론보다 근거가 중요하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23인으로 구성되고, 연구수행기관의 12인 평가단 결과를 토대로 심의할 예정이다. 연구평가와 정책결정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평가단은 자료와 현장을 검증하고, 위원회는 국가 금융정책과 지역개발의 영향을 종합해 결정한다. 최종 결론이 평가점수와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절차의 신뢰가 생긴다.

금융위원회 8월 보도자료는 평가요소·지표·배점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세부표를 본문에 실지 않았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항목별 배점, 정량·정성 기준, 이해상충 방지, 현장실사 확인목록, 자료 보완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평가 이후에는 신청자료와 사실 확인 결과, 위원회 판단의 차이를 남겨야 다음 지정이나 기존 중심지 평가에도 같은 기준을 쓸 수 있다.

지정·보완·미지정 세 갈림길을 준비해야 한다

지정이면 관보 고시와 최종 개발계획, 구역 경계, 시행주체, 자원, 단계별 목표를 확인한다. 세제지원 기한이 짧다면 입주 희망회사별 적용 가능성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 기존 서울·부산과 성과지표를 같은 단위로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보완 후 재심의라면 부족한 항목과 보완기한을 공개해야 한다. 전문인력, 국제교육, 교통, 민간기관 확약, 자원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면 사업은 이름만 바뀌 반복될 수 있다. 보완비용과 기대 편익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미지정이어도 이미 존재하는 국민연금 중심 자산운용 협력과 핀테크·교육 사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정과 무관하게 실행할 사업, 지정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을 분리하면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부결 이유를 공개하면 지역정책과 국가 금융경쟁력 사이의 기준도 선명해진다.

투자자와 회사가 확인할 공개문서

1.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결과와 최종 의결서.

2. 금융중심지 지정 고시 또는 미지정·보완 결정문.
3. 확정 개발계획의 구역도, 사업기간, 사업주체, 재원조달표.
4. 전북도의 예산서·투자심사·보조금 공고와 실제 지급결정.
5. 입주 금융회사의 공시,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공고, 법인등기와 채용공고.
6. 조세감면 신청·적용 요건과 상시근로자·투자액 유지 실적.
7. 지정 전 기준선과 지정 후 연차별 순증 성과표.

한 장짜리 성과표는 기준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종 결정 뒤에는 지정 여부만 알리는 보도자료보다 기준선과 목표를 함께 공개하는 성과표가 필요하다. 기관 수는 법인, 지점, 사무소를 나누고, 인력은 전체 인원과 운용·리서치·위험관리·준법·거래 같은 핵심직무를 분리한다. 운용자산은 기관 전체 자산과 전북에서 실제 의사결정하는 자산을 구분한다. 협약금액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약정, 납입액, 집행액으로 이어지는지 추적한다.

성과 항목	지정 전 기준선	1년·3년 뒤 확인값	피해야 할 함산
금융기관	법인·지점·사무소별 수	신규 개설·폐쇄·유지	협약기관을 입주기관에 포함
전문인력	상근자와 핵심직무	순증·이직·지역정착	교육수료자를 재직자로 포함
운용기능	현지 투자결정·리스크 기능	현지 결정 자산·위원회 횟수	기관 전체 운용자산 사용
민간투자	계약·납입·집행	누적 집행과 회수	발표금액을 집행액으로 사용
재정지원	국비·지방비·세제비용	기관당 지원과 환수	세목·사업 간 중복 지원 누락
경제효과	기존 고용·부가가치	지역 증가와 국가 순증	이전 고용을 신규 고용으로 계산

각 지표에는 자료 작성기관, 산식, 갱신주기와 원자료 링크를 붙여야 한다. 지정 1년 뒤 기관 수가 늘어도 핵심직무가 줄었다면 집적효과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로 기관 수 증가가 작아도 현지 투자위원회, 공동투자, 수탁·법률·데이터 매출이 늘면 기능적 집적이 진행된 것이다. 정량값과 정성 사례를 함께 보되, 사례 하나를 전체 성과처럼 확대하지 않는 통제가 필요하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세부 배점과 현장실사 결과가 공개되는지 보고, 평가와 정책결정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지정·보완·미지정 어느 결론이든 구역·재원·인력·성과의 다음 문서를 연결한다.
3. 투자판단은 '수혜' 명칭보다 계약, 인가, 예산, 입주와 상근인력의 실제 발생을 근거로 한다.

부록 가 · 용어 풀이

금융중심지 금융기관과 관련 산업의 집적·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3년 기본계획, 금융중심지 지정·해제와 개발계획 변경 등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기구다.

개발계획 지정 필요성, 위치·면적, 기간·재원, 기관 유치, 기반시설, 생활환경과 경제효과를 담아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계획이다.

자산소유자 연기금처럼 자산을 보유하고 배분정책과 위탁운용 방향을 정하는 기관이다.

자산운용사 투자자로부터 맡은 자금을 정해진 전략과 계약에 따라 운용하는 금융회사다.

집적효과 관련 기관·인력·서비스가 가까이 모여면서 정보교환, 거래, 채용과 혁신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다.

앵커기관 다른 기관과 인력을 끌어들이는 중심 역할을 하는 대형 기관이다. 존재만으로 생태계 전체가 자동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근인력 순증 기준시점 이후 해당 지역에서 실제 근무하는 인력 증가분에서 이전·감소분을 조정한 값이다.

국가 순편익 한 지역의 증가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감소, 재정비용과 기회비용을 함께 반영한 국가 전체 편익이다.

조세특례 법이 정한 위치·업종·기한·투자·고용 요건을 충족할 때 일반 과세보다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1. 금융위원회,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2026.08.19, <https://www.fsc.go.kr/no010101/87558>, 2026.08.21 확인.

2. KDI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정책 자료와 별첨 기본계획 요약, 2026.08.19, https://epts.kdi.re.kr/archive/frwdHist/view2?EPIC_NUM=285548, 2026.08.21 확인.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4052>, 2026.08.21 확인.
4.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01.02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0102&lsiSeq=281379&urlMode=lsInfoP>, 2026.08.21 확인.
5.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2026.07.01 시행본,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774131>, 2026.08.21 확인.
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제3 금융거점 도 전장」, 2026.01.29, https://www.jeonbuk.go.kr/newsroom/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90&dataSid=649402&menuCd=DOM_000001101000000000, 2026.08.21 확인.
7.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우리금융그룹 '전북 금융 거점 구축' 환영」, 2026.02.26, https://www.jeonbuk.go.kr/newsroom/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90&dataSid=652239&menuCd=DOM_000001101000000000, 2026.08.21 확인.
8. 전북특별자치도,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관련 보도자료, 2026.02.24, https://www.jeonbuk.go.kr/newsroom/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090&dataSid=651988&menuCd=DOM_000001101000000000, 2026.08.21 확인.
9. 이데일리, 「막 오른 금융중심지 새판짜기...서울·부산 이어 전북 시험대」, 2025.11.25,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4962646642369328>, 2026.08.21 확인.

각주

1.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9일 자료에서 12인 평가단, 총괄·금융·개발 분과, 8개 법정 요소, 3~4분기 서면평가·현장실사와 연내 심의 일정을 확인했

다.

2. 같은 자료에서 제7차 기본계획의 4대 과제와 자본시장 활성화·자산운용 산업 고도화·서울과 부산의 맞춤형 전략을 확인했다.
3.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신청 전 20일 이상 공고,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계획 포함사항과 8개 고려요소를 확인했다.
4. 전북도 1월 29일 자료의 3.59km²와 세부 구역 면적을 사용했다.
 $0.14 \div 3.59 = 3.90\%$, $1.27 \div 3.59 = 35.38\%$, $2.18 \div 3.59 = 60.72\%$ 는 연구소 계산이다.
5. 전북도가 제시한 기관 수, 국민연금 규모, 고용·지역경제 전망은 신청기관 주장으로 분류했다. 평가단의 검증값이나 금융위원회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사업장 신설, 대상 금융·보험업, 3년 100%·2년 50%, 투자·고용 한도와 추징 조건을 확인했다.
7. 세부 평가표·배점과 현장실사 결과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수치화하지 않았다.

발행 정보

제목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48 · NR-2026-048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08.21
자료 기준일	2026.08.21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자료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가입·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